

별첨 3

「신화학물질 환경관리 등록 방법(개정 의견 수렴 초안)」

제정 설명

1. 개정 배경

당 중앙위원회는 신오염물질 관리 업무를 매우 중시하고 있다. 당의 제20차 전국대표대회 보고에서는 신오염물질 관리 추진을 명확히 요구하였고, 당의 제20기 3중전회에서는 신오염물질 협동 관리 및 환경 위험 관리·통제 체계 구축을 제시하였으며, 당의 제20기 4중전회에서는 신오염물질 관리의 심화 추진을 제시하였다. 2022년 국무원 판공청은 「신오염물질 관리 행동방안」을 발표하여, 신화학물질 환경관리 등록제도의 전면 시행을 엄격한 원천 규제와 신오염물질 발생 예방을 위한 중요 조치로 설정하였다.

2026년 3월 12일, 제14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4차 회의에서 「중화인민공화국 생태환경 법전」(이하 '법전'이라 한다)이 가결·통과되었으며, 2026년 8월 15일부터 시행된다. 법전 내 화학물질 오염 위험 관리·통제 전문 장(章)에서 신화학물질 환경관리 등록제도에 관한 규정을 두어 신화학물질 환경관리 등록 주체, 등록 범위, 등록증 관리 관련 요건 및 법적 책임 등을 명확히 하였다.

중국은 2003년 「신화학물질 환경관리 방법」(구 환경보호총국령 제17호)을 공포하였고, 2010년 「신화학물질 환경관리 방법」(구 환경보호부령 제7호)을 개정·발표하였으며, 2020년 「신화학물질 환경관리 등록 방법」(생태환경부령 제12호, 이하 '12호령'이라 한다)을 개정·발표하여, 신화학물질 생산 또는 수입 전에 등록증 취득 또는 비안(備案) 처리를 의무화하고 원천 관리의 '방화벽'을 구축하여 불합리한 환경 위험을 지닌 잠재적 신오염물질이 경제사회 및 생태환경에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였다. 위 규정들은 시행 이후 신화학물질의 환경 관리를 실질적으로 강화하고, 잠재적 신오염물질의 원천 예방, 생태환경 보호

및 공중 건강 보장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다.

신오염물질 관리에 관한 당 중앙위원회의 중요 정책을 관철하고, 법전의 관련 규정을 이행하며, 신화학물질 환경관리 등록의 원천 예방 '방화벽' 기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12호령을 개정한다.

2. 개정 과정

법전 발표 이후, 생태환경부는 12호령과 법전 관련 규정에 대한 전면 검토를 조직하고, 중국 신화학물질 환경관리의 실무 경험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으며, 중국 의약품·농약 등 분야의 행정허가 제도 정책, 선진국 및 지역의 신화학물질 환경관리 경험과 방식 등을 심도 있게 연구하였다. 개정 과정에서 좌담회·서면 의견 수렴 등의 방식으로 관련 부처, 지방 생태환경 부서, 관련 업종 협회 및 기업 등의 의견과 건의를 광범위하게 청취하고 충분히 반영하였다. 이러한 업무 기반 위에서 신오염물질 관리에 관한 당 중앙위원회의 새로운 정책과 요건에 대응하고, 법전의 신화학물질 환경관리 관련 규정에 비추어, 등록 주체 및 등록 범위를 조정하고, 등록 유형을 최적화하였으며, 활동 보고, 정보 보호, 정보 전달, 감독 관리 요건 및 법적 책임 등 관련 내용을 완비하여 「신화학물질 환경관리 등록 방법(개정 의견 수렴 초안)」(이하 '방법'이라 한다)을 마련하였다.

3. 「방법」의 주요 내용

「방법」은 총 5장 47조로 구성되며, 총칙, 등록 절차와 요건, 사후관리, 법적 책임 및 부칙으로 이루어진다.

제1장 총칙은 입법 목적, 적용 범위, 기본 제도, 관리 원칙, 부처 직책 등을 주로 설명한다. 제2장 등록 절차와 요건은 등록 절차, 등록 요건 및 처리 기한을 규정하고, 등록 기준을 세분화하며, 후속 등록증 변경·말소·취소에 관한 요건 등을 명확히 한다. 제3장 사후관리는 등록 이후 기업의 오염 위험 통제 책임 이행 요건, 환경 감독 관리 요건 등을 주로 규정한다. 제4장 법적 책임은 기업·시험기관·심사 전문가 등의 법적 책임과 「방법」 관련 조항 위

반에 대한 처벌 조항 등을 주로 규정한다. 제5장 부칙은 핵심 용어 정의, 연계 정책, 발효 일자 등을 주로 규정한다.